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신자 조국 교수

(경유)

제목 판정 결과 알림

1. 접수번호 : 2017-08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사안
2.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사건 제보의 요지는, 피조사자가 출간한 아래 8편의 의혹논문들이 그 이전에 출간한 비교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한 것이라는 데 있다.

	의혹논문	비교논문
(1)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u>기억과 전망</u> 제4호, 2003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u>정치비평</u> 제8호, 2002
(2)	(2)-1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를 폭행, 협박설 비판, <u>월간 고시계</u> 제47권 2호, 2002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u>형사정책</u> 제13권 제1호, 2001
	(2)-2 아내강간: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극복하기,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2007년 제1호	
(3)	(3)-1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 <u>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u> , 제10권 1호, 2000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 <u>비교법연구</u> 1호, 2000
	(3)-2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 <u>고시연구</u> 제27권 4호, 2000	
(4)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u>달대비평</u> 제23호, 2003	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u>형사법연구</u> 제16호, 2001
(5)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u>월간 고시계</u> 44권 8호, 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u>형사법 연구</u> 제12호, 1999
(6)	제8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u>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u> 2004년 12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2003년 송두을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u>형사정책연구</u> 제56호, 2003

○ 제보자의 제보서, 피조사자의 소명서,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각 조사결과 보고서, 위 각 의혹논문 및 비교논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의혹논문들은 모두 그 각 비교논문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 그런데 먼저 의혹논문 (1)이 게재된 『기억과 전망』은 2002년 창간된 계간지로, 201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나, 본 의혹논문 발간 당시인 2003년의 목차를 살펴보면 비학술용 출간물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의혹논문 (2)-1 및 (3)-2가 게재된 『월간 고시계』와 『고시연구』는 고시정보지로서, 실질적으로 비학술용 출간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며, 의혹논문 (2)-2가 게재된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자료집』은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례 바꾸기 운동’의 자료집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의혹논문 (4)가 게재된 『당대비평』은 지금은 폐간된 잡지로, 2003년 당시 목차 내용을 살펴보면 비학술용 출간물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의혹논문 (1), (2)-1, (2)-2, (3)-2, (4)는 모두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9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중복게재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의혹논문 (3)-1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동 의혹논문이 게재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0권 제1호는 2000년 8월에 발행되었고, 비교논문이 게재된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 창간호는 2000년 6월에 출간되었는데, 피조사자가 당시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울산대학교의 『사회과학논집』에 논문을 제출하였다가 2000년 3월에 동국대학교로 옮기면서 동 대학교의 창간호에의 논문 출간 요청에 따라 동일한 논문을 위 『비교법연구』에 제출하고 위 『사회과학논집』 측에 동 논문의 출간 이전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피조사자가 출간 이전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중복게재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연구부적절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마지막으로, 의혹논문 (6)에 관해 살피건대, 동 의혹논문이 게재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이고 그 비교논문이 게재된 『형사정책

연구』는 학술지로서, 학술지 논문을 연구용역 보고서에 중복 사용한 것이므로,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중복게재 예외사유인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의혹논문에는 출처표시가 없으므로, 의혹논문 (6)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중복게재에 해당하여 연구부적절행위가 성립하지만, 2004년 당시 학술지 논문을 출처표시 내지 인용표시 없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의하더라도 위 중복게재 예외사유와 반대되는 경우이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 예외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이, 의혹논문 (6)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하고, 나머지 의혹논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연구진실성 위반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끝.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장

박종은

협조자

시행 연구진실성위원회-66 (2018.8.3) 접수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880-5153 /전송 (02)882-5153 / 비공개